|  |  |  |
| --- | --- | --- |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2011년 8월 22일 농업부 령 2011년 제3호로 공표, 2015년 4월 29일 농업부 령 2015년 제1호에 의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 및 감독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및 감독관리를 분담한다.  **제4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심사, 발급을 담당하는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조건, 절차 등을 업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농업생산 안전 보장, 농작물 품종 선별•배양 및 생산 수준 제고, 공정 경쟁 촉진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장 생산허가**  **제6조** 주요 농작물의 상품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이하 '종자생산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의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종자생산허가증은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타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허가증은 생산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생산지에서는 비(非)주요 농작물이고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주요 농작물로 취급하는 농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5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생산하는 품종이 품종검정을 통과한 품종이어야 하고; 식물 신품종권이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3)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 측정기, 전자이동 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검사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실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창고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종자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6) 전문직 종자 생산기술인력, 저장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논밭 검사, 새픔 추출 검사 및 실내 검사 등 포함, 하동) 각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 중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생산하는 경우 종자생산기술인력과 종자검사인력 각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7) 생산지역에 검역성 유해생물이 없어야 한다.  (8) 종자생산규정이 요구하는 격리 및 생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9)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생산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종자검사설비 등 설비 리스트와 구매 영수증 복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내에 위치한 종자 검사실, 창고의 권리증서 복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내에 위치한 건조장의 권리증서(또는 임대계약서) 복사본; 또는 종자건조시설•설비 권리증서 복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검정설비 검정증서 복사본; 관련 시설•설비 현황설명서 및 실물 사진;  (3) 종자 생산•저장•검정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와 근로계약의 복사본;  (4) 종자 생산지 검역증명서;  (5) 품종검정증명서 복사본;  (6) 식물 신품종권이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 동의 증명을 제출해야 함;  (7) 종자 생산안전 격리 및 생산조건 설명서;  (8)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농작물의 종자경영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전 항 제(2)호에 규정한 서류와 종자 생산•저장•검정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및 근로계약 복사본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종자경영허가증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심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시 생산장소, 건조장 또는 건조시설•설비, 저장시설, 검사시설•설비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류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해당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장소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 방법에 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고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심사의견 및 신청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종자생산허가증에는 허가증 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 명칭, 검정번호, 식물 신품종권 번호,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생허자(X) 제X호'로 표시한다. 그 중, 첫번째 괄호에는 허가증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고 두번째 괄호에는 최초 발급 연도 번호가 들어가며 세번째 괄호에는 네자리 순서번호가 들어간다. '\_\_'에는 생산하는 종자의 유형을 표기하되 b는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뜻하고 c는 기타 주요 농작물을 뜻한다.  **제11조**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일 기업이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동종류 작물 품종 추가 신청을 동일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기존 허가증에 해당 품종을 추가 기재하며 별도의 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종자 생산자가 동일 발급기관에 신규 증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0일 전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경영허가**  **제12조**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이하 '종자경영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의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경영허가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다음 각 호의 종자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농업부가 발급한다.  (1)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종자경영허가증;  (2)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위안 이상인 회사의 종자경영허가증.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제13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검사실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방법 제7조 제5항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자 창고와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온전한 세트로 구성된 종자 가공 플랜트를 보유해야 하고 잡종 옥수수 종자 총 가공능력이 10톤/1h 이상, 잡종 벼 종자 총 가공능력이 5톤/1h이상 이어야 하며 가공공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문직 종자가공 기술인력이 5명 이상, 종자저장 기술인력이 3명 이상,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6)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이외의 기타 가공•포장을 요구하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5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250만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2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 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검사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이 방법 제7조 제5항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자 창고와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고 영업장소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비(非)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반 벼•밀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0톤/1h이상이어야 하고; 대두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3만톤/1h 이어야 하며; 면화•유채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톤/1h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상응하는 종자 가공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5) 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공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비(非)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공장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문직 종자가공 기술인력, 종자저장 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을 각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업부가 규정한 가공•포장을 요구하지 않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과 고정자산은 전 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종자 검사•저장 시설•설비와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하여 농업부에 등록(備案)한다.  **제15조**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가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기타 이 방법에 규정한 해당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 조건.  **제17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위안 이상인 회사가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자산이 5,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2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3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검사실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의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종자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잡종 벼 종자 및 그 암수개체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0톤/1h 이상이어야 하고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20톤/1h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공장 면적이 8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능력과 가공공장 면적이 이 방법 제14조 제(4)호, 제(5)호의 해당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전문직 종자 생산•가공•저장 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검사인력을 각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6) 전문적인 육종기구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 육종인력 및 업무경비를 보유해야 하며 연간 연구경비 투입이 연간이익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자가보유 연구실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육종용지 100묘(역주: 1묘는 666.67m2)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전국 세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태구역에 세개 이상의 실험장을 두어야 하고 각 실험장마다 10묘 이상의 실험용지 및 그에 상응하는 파종•수확•선별 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중급 이상 직함(또는 관련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의 연구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농작물별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고급 직합(또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의 연구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7) 안정적인 종자 생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 그 중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생산기지의 면적이 5,000묘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생산기지 면적이 500묘 이상이어야 한다.  (8) 건전한 A/S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9)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국가급 검정을 통과한 품종을 2개 이상 보유하거나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최소 3개 성(자치구•직할시)의 성급 검정을 통과한 품종을 5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식물 신품종권을 취득한 품종을 5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 신청일 이전 3년간(신청 연도 불포함 ) 경영을 신청하는 작물 종류의 종자 경영량이 전국 해당 종류 작물 종자 시장에서 1%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이 회사 총 경영량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1)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7조**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종자 검사, 가공 등 시설•설비 리스트와 구매 영수증 복사본; 종자 검사실, 가공공장, 창고의 권리증서 복사본; 건조장의 권리증서(또는 임대계약서) 복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설비의 권리증서 복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 관련 검사•포장설비 검정증서 복사본; 관련 시설•설비의 현황 설명서 및 실물 사진;  (4) 종자 검사•가공•저장 등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와 노동계약서 복사본;  (5)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8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농업부에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육종기구 현황 설명서; 육종연구 시설•설비의 자가 재산권리증 복사본 및 실물 사진; 육종연구 및 품종 실험 용지의 5년 이상 계약기간의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복사본.  (2) 육종인력의 직함(또는 학력) 증명서류 및 노동계약서 복사본;  (3) 품종검정서 또는 식물 신품종권 증서의 복사본, 품종 자주적 생산경영권 구비 증명서류; 신청일 이전 3년간의 허가를 신청하는 작물 종자의 경영량, 경영액 및 전국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설명서류와 관련 증명서류;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 경영액 설명서류와 증명서류;  (4) 신청일 이전 3년간의 종자 생산기지 증명서류. 종자 생산지(촌(村)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재배면적, 생산기지 소재 촌(村)(조(組))의 연락인과 생산수탁인의 전화번호표, 10건 생산계약의 본사본 또는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의 복사본 포함.  (5) A/S제도 및 A/S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을 포함한 건전한 A/S 시스템 보유 증명서류.  (6)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내에 추진한 종자 생산•경영 및 육종연구 현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심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영업장소, 가공•저장시설, 검사시설•설비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류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한 후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종자경영허가증에는 허가증 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경영 농작물의 범위, 경영방식,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경허자(X) 제X호'로 표시한다. 그 중, 첫번째 괄호에는 허가증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고 두번째 괄호에는 최초 발급 연도 번호가 들어가며 세번째 괄호에는 네자리 순서번호가 들어간다. '\_\_'에는 경영 유형을 표기하되 a는 농업부가 허가증을 발급하고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함을 뜻하고;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뜻하며; c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이외의 주요 농작물 종자를 뜻하고; d는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를 뜻하며; e는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함을 뜻한다.  (2) 경영하는 작물 범위에는 주요 농작물의 경우 작물 명칭을 기재하고 비(非)주요 농작물의 경우에는 채소, 화훼, 마(麻)류 등 작물 유형을 기재한다.  (3) 종자 경영방식에는 가공, 포장, 도매, 소매 또는 수출입을 기재한다.  (4) 유효 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기재하고 허가증 발급기관의 관할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허가증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에 기재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신청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종자 경영에 계속하여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 경영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종자 경영자가 분할 포장이 필요 없는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 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대리 판매하는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분할 포장이 필요 없는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종자 구입 시 반드시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 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대리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3조** 종자 경영자가 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유효 구역에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영업집조 취득 또는 변경 후 15일 내에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와 경영허가증 발급기관에 신고(備案)해야 한다. 신고 시 종자경영허가증, 영업집조 복사본 및 분지기구의 주소, 경영방식,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파종 후 30일 내에 생산장소, 품종 명칭, 생산면적 등 정보를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생산 정보를 취합하여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서 및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종자 경영자는 종자경영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종자 조달원(源), 가공, 저장, 운송 및 품질검사 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담당자, 판매경로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종자 경영기업은 매년 5월 말 전에 직전년도의 주요 경영활동을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종자 경영 정보를 취합하여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종자 생산자, 종자 경영자의 생산•경영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말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종자 생산자•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2) 종자 생산자•경영자가 이 방법에 규정한 허가조건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한부 시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8조** 신청인이 관련 정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한다. 해당 신청인은 1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기만, 뇌물 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신청인은 3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하급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종자 생산•경영허가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발급 권한에 따르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독단적으로 발급 기준을 낮추어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법을 어기고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기타 경우.  **제30조**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 철회, 말소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영업집조를 말소 또는 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 정보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허가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단 법에 의거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농업행정 관리부서 및 그 업무인력은 관리 과정 중 지득한 종자 생산자•경영자의 상업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이 방법에서 종자 생산이라 함은 종자의 재배, 수확, 건조 또는 종자 코팅 등 활동을 뜻한다.  이 방법에서 종자 경영이라 함은 생산된 종자의 선별, 등급 분류, 건조, 코팅 등 가공처리와 종자의 포장, 라벨링, 판매 등 활동을 뜻한다.  **제33조** 이 방법에서 종자 가공 플랜트라 함은 주기계와 부대 시스템이 정합되고 가공공장 내에 고정 설치되어 종자의 정선(精选), 계량과 포장 연속 업무기능을 실현하는 종자 가공시스템을 뜻한다. 주기계는 주로 바람선별기(풍구 부분은 전후 통풍로와 쌍으로 된 침전실이 있어야 함. 체 부분은 3층 이상의 체로 되어야 함), 중력식 선별기와 컴퓨터 계량 포장 산출설비를 포함한다. 부대 시스템은 주로 운송시스템, 저장시스템, 제진시스템, 불순물제거 시스템과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잡종 벼 종자의 가공 플랜트는 길이 선별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안와통 선별기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제품 생산, 용역 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한 사용 시간이 12개월 이상인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며 건물,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용구 및 기타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이 법에 규정한 종자 연구, 생산, 가공, 검사, 저장 등 인력은 소속기업과 3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방법에 규정한 종자 생산•가공•검사 시설•설비 및 종자 검사실, 창고, 종자 건조시설•설비, 가공공장은 신청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제35조** 유전자변형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허가 규정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6조** 구(현•시)급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시)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신청을 심사한다.  **제37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며 관련 서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1년 2월 26일 공표하고 2004년 개정한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관리방법>(농업부 령 제4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농업부가 이 방법 시행일 전에 발표한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 시행일 전에 이미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이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4월 1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의 경우 그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며; 이미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이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2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의 경우 그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년 9월 2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  |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  （2011年8月22日农业部令2011年第3号公布，2015年4月29日农业部令2015年第1号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规范农作物种子生产、经营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申请、审核、核发和监管，适用本办法。  **第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受理、审核、核发和监管工作。  **第四条**　负责审核、核发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将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办理条件、程序等在办公场所公示。  **第五条**　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有利于保障农业生产安全、提升农作物品种选育和生产水平、促进公平竞争的原则，依法发放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  **第二章　生产许可**  **第六条**　生产主要农作物商品种子的，应当依法取得主要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以下简称种子生产许可证）。  　　主要农作物杂交种子及其亲本种子、常规种原种种子的生产许可证由生产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其他主要农作物的种子生产许可证由生产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生产所在地为非主要农作物，在其他省（自治区、直辖市）为主要农作物，生产者申请办理种子生产许可证的，生产所在地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受理并依法核发。  **第七条**　申请领取种子生产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生产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申请其他主要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500万元；  　　（二）生产的品种通过品种审定；生产具有植物新品种权的种子，还应当征得品种权人的书面同意；  　　（三）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生产许可证的，还应当配备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1台（套）以上；  　　（四）检验室100平方米以上；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生产许可证的，检验室150平方米以上；  　　（五）有仓库500平方米以上，晒场10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  　　（六）有专职的种子生产技术人员、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涵盖田间检验、扦样和室内检验，下同）各3名以上；其中，生产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的，种子生产技术人员和种子检验人员各5名以上；  　　（七）生产地点无检疫性有害生物；  　　（八）符合种子生产规程要求的隔离和生产条件；  　　（九）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八条**　申请种子生产许可证，应当提交以下材料：  （一）种子生产许可证申请表；  （二）营业执照复印件；种子检验等设备清单和购置发票复印件；在生产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的种子检验室、仓库的产权证明复印件；在生产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的晒场的产权证明（或租赁协议）复印件，或者种子干燥设施设备的产权证明复印件；计量检定机构出具的涉及计量的检验设备检定证书复印件；相关设施设备的情况说明及实景照片；  　　（三）种子生产、贮藏、检验技术人员资质证明和劳动合同复印件；  　　（四）种子生产地点检疫证明；  　　（五）品种审定证书复印件；  　　（六）生产具有植物新品种权的种子，提交品种权人的书面同意证明；  　　（七）种子生产安全隔离和生产条件说明；  　　（八）农业部规定的其他材料。  　　种子生产许可证申请者已取得相应作物的种子经营许可证的，免于提交前款第二项规定的材料和种子贮藏、检验技术人员资质证明及劳动合同复印件，但应当提交种子经营许可证复印件。  **第九条**　审核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审核时应当对生产地点、晒场或者干燥设施设备、贮藏设施、检验设施设备等进行实地考察并查验有关证明材料原件（对具有相应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只考察生产地点）。具备本办法规定条件的，签署审核意见，上报核发机关；审核不予通过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核发机关应当自收到审核意见和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核发工作。核发机关认为有必要的，可以进行实地考察。符合条件的，发给种子生产许可证并予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条**　种子生产许可证应当注明许可证编号、企业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发证机关、公告文号、发证时间，以及生产种子的作物种类、品种名称、审定编号、植物新品种权号、生产地点、有效期限等项目。  　　许可证编号为“\_\_（x）农种生许字（x）第x号”。其中，第一个括号内为发证机关简称，第二个括号内为首次发证年号，第三个号码为四位顺序号；“\_\_”上标注生产种子的类型：b为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c为其他主要农作物种子。  **第十一条**　种子生产许可证有效期3年。同一企业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向同一核发机关申请增加生产同类作物品种的，由核发机关在原证上加注相应品种，不再另行发放生产许可证。  　　种子生产许可证有效期满后，种子生产者需在同一核发机关申领新证的，应当在许可证期满70日前重新提出申请。  **第三章　经营许可**  **第十二条**　经营农作物种子的，应当依法取得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以下简称种子经营许可证）。  　　主要农作物杂交种子及其亲本种子、常规种原种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下列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农业部核发：  　　（一）从事种子进出口业务的公司的种子经营许可证；  　　（二）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注册资本达到1亿元以上的公司的种子经营许可证。  　　其他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第十三条**　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0万元；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1台（套）以上；检验室150平方米以上；  　　（三）有符合本办法第七条第五项要求的种子仓库、晒场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300平方米以上；  　　（四）具有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杂交玉米种子不低于10吨/小时，杂交稻种子不低于5吨/小时，加工厂房500平方米以上；  　　（五）有专职种子加工技术人员5名以上，种子贮藏技术人员3名以上，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5名以上；  　　（六）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十四条**　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以外的应当加工、包装的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申请主要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500万元，固定资产不少于250万元；申请非主要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2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万元；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检验室100平方米以上；  　　（三）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符合本办法第七条第五项要求的种子仓库、晒场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200平方米以上；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300平方米以上，晒场5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200平方米以上；  　　（四）经营常规稻、小麦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10吨/小时以上；经营大豆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3吨/小时以上；经营棉花、油菜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1吨/小时以上；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具有相应的种子加工设备；  　　（五）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种子加工厂房500平方米以上；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种子加工厂房200平方米以上；  　　（六）有专职的种子加工技术人员、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各3名以上。  　　申请农业部规定的可以不经加工、包装的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其注册资本和固定资产应当符合前款第一项的规定，种子检验、仓储设施设备和人员的具体要求由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报农业部备案。  **第十五条**从事种子进出口业务的公司申请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0万元；  　　（二）本办法规定的核发相应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其他条件。  **第十六条**　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注册资本达到1亿元以上的公司，申请种子经营许可证的，应当具备以下条件：  （一）固定资产不少于5000万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2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2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3台（套）以上，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2台（套）以上；检验室200平方米以上；  　　（三）申请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1500平方米以上，晒场30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500平方米以上；申请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300平方米以上，晒场5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300平方米以上；  　　（四）申请经营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的，应当配备与其种子经营规模相适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杂交稻种子及其亲本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达到10吨/小时以上，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达到20吨/小时以上，加工厂房800平方米以上；申请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加工能力和加工厂房达到本办法第十四条第四、五项的相应要求；  　　（五）有专职的种子生产、加工、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各5名以上；  　　（六）有专门的育种机构，固定的育种人员和工作经费，年科研经费投入不得低于年利润的10%；自有科研实验室300平方米以上，稳定的育种用地100亩以上，其中，在全国3个以上不同生态区各有3个以上的测试点，每个点有10亩以上试验用地以及相应的播种、收获、考种设施设备；有专职从事科研育种的中级以上职称（或者相关专业本科以上学历）研究人员5名以上；生产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每种作物还应当有从事科研育种的专职高级职称（或者相关专业硕士以上学历）研究人员1名以上；  　　（七）有稳定的种子生产基地。其中，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基地5000亩以上；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基地500亩以上；  （八）有健全的售后服务体系；  （九）申请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2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申请并通过国家级审定的品种，或者5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申请并至少在3个省（自治区、直辖市）通过省级审定的品种；申请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5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获得植物新品种权的品种；  　　（十）申请经营作物种类的种子经营量在申请之日前3年内（不含申请当年），有1年以上占全国该种类作物种子市场份额的1%以上。自主知识产权品种的经营量占公司经营总量的比例10%以上；  　　（十一）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十七条**　申请种子经营许可证，应当提交以下材料：  　　（一）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申请表；  （二）营业执照复印件；  （三）种子检验、加工等设施设备清单和购置发票复印件；种子检验室、加工厂房、仓库的产权证明复印件；晒场的产权证明（或租赁协议）复印件，或者种子干燥设施设备的产权证明复印件；计量检定机构出具的涉及计量的检验、包装设备检定证书复印件；相关设施设备的情况说明及实景照片；  　　（四）种子检验、加工、贮藏等有关技术人员的资质证明和劳动合同复印件；  　　（五）农业部规定的其他材料。  **第十八条**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的公司，申请农业部核发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除提交第十七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下列材料：  　　（一）育种机构情况说明；科研育种设施设备的自有产权证明复印件及实景照片；科研育种和品种试验用地5年以上流转协议复印件；  　　（二）育种人员的职称（或学历）证明材料及劳动合同复印件；  　　（三）品种审定证书或者植物新品种权证书复印件，具有品种自主生产经营权的证明；申请之日前3年申请许可作物的种子经营量、经营额及占全国市场份额的说明及相关证明；自主知识产权品种的种子经营量、经营额说明及相关证明；  　　（四）申请之日前3年的种子生产基地证明材料，包括制种地点（具体到村）、制种面积、基地村（组）联系人和受委托制种人电话表，以及10份制种合同的复印件，或者土地流转协议复印件；  　　（五）健全的售后服务体系证明材料，包括售后服务制度和售后服务网络建设情况等；  　　（六）有效期届满前重新申请的，还应当提供原种子经营许可证有效期内种子生产经营和科研育种情况的证明材料。  **第十九条**　审核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审核机关应当对营业场所、加工仓储设施、检验设施设备进行实地考察并查验有关证明材料原件。具备本办法规定条件的，签署审核意见，上报核发机关；审核不予通过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核发机关应当自收到申请材料和审核意见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核发工作。核发机关认为有必要的，可以进行实地考察。符合条件的，发给种子经营许可证并予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二十条**种子经营许可证应当注明许可证编号、企业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发证机关、公告文号、发证日期，以及经营作物范围、经营方式、有效区域、有效期限等项目：  　　（一）许可证编号为“\_\_（x）农种经许字（x）第x号”，第一个括号内为发证机关简称，第二个括号为首次发证年号，第三个号码为四位顺序号；“\_\_”上标注经营类型：a为农业部核发，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的；b为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c为杂交稻、杂交玉米以外的主要农作物种子；d为非主要农作物种子；e为从事种子进出口业务；  　　（二）经营作物范围，主要农作物填写作物名称，非主要农作物填写蔬菜、花卉、麻类等作物类别；  　　（三）种子经营方式，填写加工、包装、批发、零售或进出口；  　　（四）有效区域按行政区域填写，最大不超过核发机关管辖范围，由核发机关决定。  **第二十一条**　种子经营许可证有效期为5年。在有效期内变更许可证标注项目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办理变更手续，并提供相应证明材料。  　　经营许可证期满后继续从事种子经营的，种子经营者应当在期满6个月前重新申请。  **第二十二条**　种子经营者专门经营不再分装的包装种子的，或者受具有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经营者以书面委托代销其种子的，可以不办理种子经营许可证，但应当有固定的营业场所。  　　专门经营不再分装的包装种子的，购进种子时应当与具备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企业签订购销合同。  　　受具有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经营者委托代销其种子的，应当与委托方签订委托代销合同。  **第二十三条**　种子经营者在经营许可证规定的有效区域设立分支机构的，应当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工商登记，并在取得或变更营业执照后15日内，向当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和原发证机关备案。备案时应提交种子经营许可证、营业执照的复印件以及分支机构的住所、经营方式、负责人姓名、联系电话等材料。  **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四条**主要农作物种子生产者应当按照种子生产许可证的规定组织种子生产。种子生产者应当建立种子生产档案，并在播种后30日内，将生产地点、品种名称、生产面积等信息向生产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将生产信息汇总后逐级上报至农业部。  **第二十五条**种子经营者应当建立种子经营档案，载明种子来源、加工、贮藏、运输和质量检测各环节的简要说明及责任人、销售去向等内容。  　　种子经营企业应当在每年5月底前将上一年度主要经营活动向发证机关报告。发证机关应当将种子经营信息汇总后上报农业部。  **第二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种子生产、经营者的种子生产、经营行为进行监督检查。  **第二十七条**在许可证有效期内，有下列情形之一的，发证机关应当注销许可证，并予以公告：  　　（一）种子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活动1年以上的；  　　（二） 种子生产、经营者不再具备本办法规定的许可条件，经限期整改仍达不到要求的。  **第二十八条**　申请人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不予许可，并通报有关情况。申请人在1年内不得再次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  　　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撤销行政许可，并通报有关情况。申请人在3年内不得再次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  **第二十九条**　上级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下级农业行政主管部门的种子生产经营许可行为进行监督检查。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一）未按核发权限发放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二）擅自降低核发标准发放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三）其他未依法核发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第三十条**　农业行政主管部门依法吊销、撤销、注销违法行为人的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应当在决定作出后5个工作日内通知工商行政管理机关依法注销或变更营业执照。  **第三十一条**　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建立种子生产和经营许可管理网上查询系统，公布相关许可信息，但依法需要保密的除外。  　　对管理过程中获知的种子生产、经营者的商业秘密，农业行政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保密。  **第五章　附　则**  **第三十二条**　本办法所称种子生产，是指种植、采收、晾晒或者烘干种子的活动。  　　本办法所称种子经营，是指对生产的种子进行清选、分级、干燥、包衣等加工处理，以及包装、标识、销售的活动。  **第三十三条**　本办法所称种子加工成套设备，是指主机和配套系统相互匹配并固定安装在加工厂房内，实现种子精选、计量和包装流水作业功能的种子加工系统。主机主要包括风筛清选机（风选部分应具有前后吸风道，双沉降室；筛选部分应具有三层以上筛片）、重力式清选机和电脑计量包装喷码设备；配套系统主要包括输送系统、储存系统、除尘系统、除杂系统和电控系统。杂交水稻种子的加工成套设备还包括能够完成长度清选作业的窝眼筒清选机。  　　本办法所称固定资产，是指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者经营管理而持有的、使用时间超过12个月的非货币性资产，包括房屋、建筑物、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设备、器具、工具等。  **第三十四条**　本办法规定的种子科研、生产、加工、检验、贮藏等人员，应当与所在企业签订有3年以上的劳动合同。  　　本办法规定的种子生产、加工、检验设施设备，以及种子检验室、仓库、种子干燥设施设备、加工厂房，应当为申请企业自有产权。  **第三十五条**　转基因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规定，由农业部另行制定。  **第三十六条**　没有设立农业行政主管部门的区（县、市），种子生产、经营许可证由地（市）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  **第三十七条**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由农业部统一印制，相关表格格式由农业部统一制定。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11年9月25日起施行。农业部2001年2月26日发布、2004年7月1日修订的《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农业部令第48号）同时废止。农业部在本办法施行前发布的有关种子生产、经营许可的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适用本办法。  　　本办法施行之日前已取得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且有效期在本办法施行之日至2012年4月1日届满的企业，其种子生产许可证的有效期自动延展至2012年4月1日；已取得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且有效期在本办法施行之日至2012年9月25日届满的企业，其种子经营许可证的有效期自动延展至2012年9月25日。 |